

추락방지용 안전시설(건설업 클린사업) 지원안내

1 지원대상

-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
- 「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」과 「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」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(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,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)

<지원제외 대상>

-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(토목·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-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
-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2 지원조건 및 절차

- 건설현장 당 최대 3,000만원
 - 시스템비계,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(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조건표 10% 상향 적용)
 - 안전방망(낙하물방지망, 추락방호망)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·설치비용(공단판단금액)의 20억 미만 65%, 20~50억 미만 50%까지 지원
-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임대비만 지원(조건표 금액의 47%), 안전방망(재료비)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
 - ※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(clean.kosha.or.kr)

○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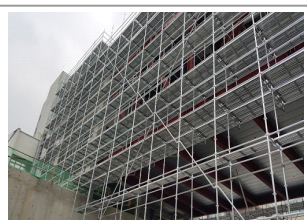


3 신청기간 및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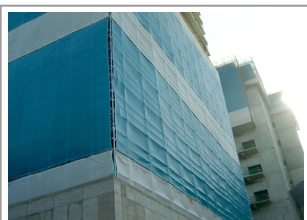
- 기간 : '23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
 - ※ 연간 3회까지 지원(20억 미만: 9개소, 20억 ~50억 미만: 3개소)
- 장소 :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(우편·직접 방문, ☎1544-3088) 또는 온라인(clean.kosha.or.kr) 접수

4 지원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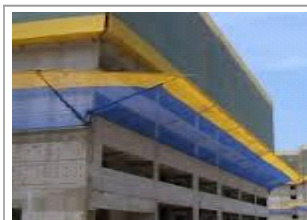
- 시스템비계 : 수직·수평·가새재, 안전난간, 가설계단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
- 안전방망 :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,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(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)
- 사다리형 작업발판: 최대높이 3.5m 이하,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(S마크 인증품), 현장 당 2개 이내
 - ※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,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



시스템비계



수직보호망



플라잉넷



추락방호망

< 클린홈페이지 접속 방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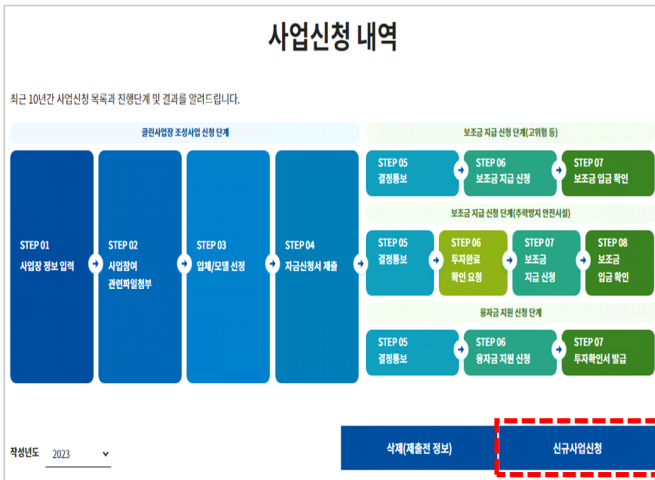
① 홈페이지(clean.kosa.or.kr) 접속 후 참여사업장 로그인 클릭



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



③ "신규사업신청" 클릭



④ "추락방지 안전시설" 클릭



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(단,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*,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환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.)

* '23년 자진신고 기간 : [상반기] 4.1.(토)~5.31.(수), [하반기] 10.1.(일)~11.30.(목)

-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 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
-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·훼손·분실·목적 외 사용·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 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④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⑤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
-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